

의안번호	제 352 호
의 결 연 월 일	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자치연수원 도민교육 조례안

발 의 자	오영탁 의원 등 7인
발의연월일	2023년 7월 4일

# 충청북도자치연수원 도민교육 조례안

(오영탁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352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3년 7월 4일

발 의 자 : 오영탁, 노금식, 최정훈,  
김성대, 이옥규, 이태훈,  
임영은

## 1. 제정이유

- 「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」이 2021. 10. 8. 법률 제18471호로 일부 개정(2022. 1. 13. 시행)되며 신설된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민간인 대상 무상교육의 법적 토대가 확보되었음.
- 충청북도자치연수원의 도민 대상 교육과정의 무상교육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조례를 마련함으로써 도민교육의 원활한 추진과 활성화를 도모하여 궁극적으로 도민의 자기계발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도민교육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·시행하도록 규정함(안 제3조)
- 공익상 필요한 경우 도민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함(안 제4조)
- 도민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(안 제5조)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」

나. 관련부서 협의 : 자치연수원 도민연수과와 협의함.

다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

라. 조례안예고 : 2023. 7. 5. ~ 7. 10.(5일간)

## 충청북도자치연수원 도민교육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」 제23조제1항 단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, 충청북도자치연수원에서 제공하는 도민교육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자기 계발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도민”이란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.
2. “도민교육”이란 충청북도자치연수원에서 도민에게 제공하는 교육훈련을 말한다.

제3조(운영계획) ①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충청북도 도민교육 운영계획(이하 “운영계획”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「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」 제5조에 따른 교육훈련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.

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교육훈련 기본목표
2. 교육훈련 운영과정 및 대상
3. 교육훈련 일정 및 기간
4. 그 밖에 도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

제4조(도민교육 운영) 도지사는 「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」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공익상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민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.

1. 국정·도정 과제와 시책 등에 대한 공유 및 학습
2. 지역사회 지속가능한 발전 및 경제활동 증진
3. 지방자치에 대한 의식 및 자율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
4. 지역 역사·문화·환경의 보전(保全) 및 이해 교육
5. 도민의 안전을 위한 안전 정책에 대한 교육
6.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

제5조(지원) 도지사는 도민교육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교재비 및 실습 체험비
2. 현장 견학에 필요한 경비
3. 그 밖에 도민교육 운영 및 내실화에 필요한 경비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관련법령 발취

### □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(약칭: 지방공무원교육법)

[시행 2022. 1. 13.] [법률 제18471호, 2021. 10. 8., 일부개정]

**제5조(교육훈련기본계획의 수립)**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지방공무원의 체계적인 능력개발을 위하여 5년 단위의 교육훈련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 10. 8.>

② 교육훈련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교육훈련의 목표
2. 중장기 인력수요 및 소속 지방공무원의 역량 분석
3. 중장기 교육훈련 수요 예측
4. 교육훈련의 실시
5. 교육훈련기관의 개선·발전
6. 교육훈련에 관한 중장기 투자계획
7. 그 밖에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교육훈련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 10. 8.>

**제8조(교육훈련기관)** ①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 라 한다) 소속 지방공무원, 시·도회의의 의장 소속 지방공무원과 시·도 관할구역의 시·군·자치구의 시장·군수·구청장 소속 지방공무원, 시·군·구의회의 의장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은 「지방자치법」 제126조에 따라 시·도지사 소속으로 설치한 교육훈련기관(이하 “지방공무원교육원” 이라 한다)에서 실시한다. <개정 2013. 8. 6., 2021. 10. 8.>

② 지방공무원교육원을 설치하지 아니한 시·도의 경우 해당 시·도지사 소속 지방공무원, 해당 시·도회의의 의장 소속 지방공무원과 해당 시·도 관할구역의 시·군·자치구의 시장·군수·구청장 소속 지방공무원, 시·군·구의회의 의장 소속 지방공무원

에 대한 교육훈련은 다른 시·도지사 소속의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통합하여 실시한다. <개정 2013. 8. 6., 2021. 10. 8.>

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 지방공무원(5급 승진후보자를 포함한다)에 대한 교육훈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은 「공무원 인재개발법」 제4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전문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한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4. 11. 19., 2015. 12. 29., 2017. 7. 26., 2021. 10. 8.>

④ 제2항에 따른 통합교육훈련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 <개정 2013. 8. 6.>

⑤ 교육감 소속의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한다.

**제12조(교육훈련계획 수립)**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5조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매년 해당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**제23조(교육훈련기관의 운영)** 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훈련시설, 교육훈련 운영과정 등을 국가기관·공공단체 또는 민간에 유상(有償)으로 제공할 수 있다. 다만, 공익상 필요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교육훈련시설을 무상(無償)으로 사용하게 하거나, 교육훈련 운영과정 등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. <개정 2021. 10. 8.>

② 제1항 본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·교육훈련 운영과정 등의 유상 제공에 따른 수입금은 「지방회계법」 제26조에 따른 수입대체경비로 회계처리할 수 있다. <개정 2016. 5. 29., 2021. 10. 8.>

# 비용추계서

## 1. 사업개요

- 충청북도자치연수원의 도민 대상 교육과정의 무상교육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조례를 마련함으로써 도민교육의 원활한 추진과 활성화를 도모하여 궁극적으로 도민의 자기계발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.

## 2. 비용발생 요인

- 도민교육 운영 및 내실화를 위하여 소요되는 각종 운영비 및 경비

## 3. 관련조문

- 제5조(지원) 도지사는 도민교육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도민에게 지원할 수 있다.

## 4. 비용추계 결과

### 가. 추계의 전제

- 재정수반요인 : 도민교육 운영 및 무상 지원을 위한 소요예산
- 추 계 기 간 : 2023년부터 2027년부터 5년간으로 함

### 나. 추계의 결과

- 추 계 결 과 : 5년간 1,031,480천원 (연간 206,296천원)  
- 도민교육 운영의 전반적인 예산 연간 206,296천원 소요

### 다. 재원조달방안 : 도비 100%(자체재원)

## 5. 연도별 비용추계표 : 붙임

## 6. 작성자 : 자치연수원 도민연수과장 이종섭



## < 연도별 비용 추계표 >

(단위 : 천원)

구 분	1차년도 (2023년)	2차년도 (2024년)	3차년도 (2025년)	4차년도 (2026년)	5차년도 (2027년)	계
세 입						
세 출	206,296	206,296	206,296	206,296	206,296	1,031,480
○ 도민행복교육						
- 일반경상수용비	18,000	18,000	18,000	18,000	18,000	90,000
- 교육교재 제작 등	25,750	25,750	25,750	25,750	25,750	128,750
- 교육실습재료 구입	4,000	4,000	4,000	4,000	4,000	20,000
- 강사수당 및 여비	84,540	84,540	84,540	84,540	84,540	422,700
- 도민교육 현지견학 차량 임차료	6,000	6,000	6,000	6,000	6,000	30,000
- 도민교육 현지견학 보험료	2,040	2,040	2,040	2,040	2,040	10,200
- 도민교육관리시스템 유지보수	21,216	21,216	21,216	21,216	21,216	106,080
- 찾아가는 교육운영여비	3,250	3,250	3,250	3,250	3,250	16,250
- 도민교육운영 (행사실비보상금)	40,000	40,000	40,000	40,000	40,000	200,000
- 교육생 공로시상품	1,000	1,000	1,000	1,000	1,000	5,000
- 교육참가자 응급치료비	500	500	500	500	500	2,500
<b>재원 조달</b>						
의존 재원	소 계					
	보조금					
	지방교부세					
자체 수입	소 계					
	지방세					
	세외수입					